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정금연 예산분석관  
황진솔 예산분석관

**지원** | 김자영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행정안전위원회 】

2022.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 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	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6

#### II. 주요 현안 분석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문제점 .....	9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	12
1-2.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필요 .....	18
1-3. Any-ID 서비스의 보안성 및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문제 .....	24
1-4.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의 효과성 문제 .....	27

### III. 개별 사업 분석

1.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등 .....	32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의 반복적 지원 문제 .....	35
3.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38
4. 자치분권위원회 운영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44
5. 제주4·3피해보상의 심사속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	48
6.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 .....	52
7. 재난대책비의 효율적 편성 방안 검토 필요 .....	56
8.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비용의 국비 지원 문제 등 .....	60
9.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의 수요부족 문제 .....	64
10.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을 고려한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의 예산 규모 조정 필요 .....	68
11. 기타경상이전수입 .....	72

## [인사혁신처]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7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8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83

### II. 개별 사업 분석

- 1. 수탁출제의 법적근거 정비 필요 ..... 85
- 2. 경력채용 시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88
- 3. 수안보상록호텔(복지시설) 매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91

## [경찰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9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0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01

## II. 개별 사업 분석

1. 무인단속장비 관련 고지서 발급량을 고려한 적정 우편요금 편성 필요 ..... 103
2. 무인단속장비 구매 편성단가 현실화 및 집행방식 개선 필요 ..... 107
3.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111
4. 치안활동비의 예산과목 변경 필요 ..... 115
5. 경찰특공대 급식비 이중지원 문제 ..... 1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 12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25

## II. 주요 현안 분석

- 1. 위탁선거경비 관련 문제점 ..... 126
  - 1-1.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문제 ..... 127
  - 1-2. 위탁선거 홍보 경비의 국비 부담 문제 ..... 131

## III. 개별 사업 분석

- 1. 한국선거방송의 송출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 133
- 2. 선거장비 구매비용의 부담 기준 마련 필요 ..... 136

## [소방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14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4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45

## II. 개별 사업 분석

1.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연계적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 147
2.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집행실적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 151
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 체계 구축연구(R&D): 이월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154



**행정안전부**



## 1 현황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68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3억 원(3.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2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5억 원이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4,208	61,118	61,118	63,210	2,092	3.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399	5,302	5,302	5,461	159	2.9
합 계	269,607	66,420	66,420	68,671	2,251	3.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80조 72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5,960억 원(3.1%)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8조 8,084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2,640억 원이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1,735,638	69,513,672	81,417,308	78,808,408	△2,608,900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12,810	1,151,203	1,251,146	1,264,038	12,892	1.0%
합 계	72,448,448	70,664,875	82,668,454	80,072,446	△2,596,008	△3.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감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증액하였고(2022년 65.1조원 → 2023년 75.3조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추진체계 및 로드맵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의 방향성·전략 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히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법률 개정, 민간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ISP 수립 등 사업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의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둘째,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제도 운영의 효과성·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및 제도의 방향성·설계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대책비는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출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한 재난지원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 395억원 규모이다.

2022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설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사업 등이 있다.

그 중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설치 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침수 취약도로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동 차단 등으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하천 수위계 센서와 출입 차단기, 경보시설을 연계하여,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 출입 통제 및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되어 성능·용량이 미흡한 지자체 주소정보시스템을 중앙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단위: 백만원)
		예산안
일반회계 (10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764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6,701
	민원창구 디지털 서비스(정보화)	27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7,395
	경찰국기본경비(총액)	20
	경찰국기본경비	189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설치 사업	6,750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2단계)(R&D)	2,400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1,500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음지원(R&D)	2,500
합 계		39,489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재난대책비(보조), 정보보호 인프라확충(정보화) 등이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연 1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이 증액되었다. ②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등)로 인한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및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정비사업이 증액되었다. ③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의 혁신적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정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사업도 증액되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1)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개)	지역경제활성화	694	665	2,394	1,700	245.0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6,006	6,006	13,577	7,571	126.1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정보화)	2,227	2,227	4,594	2,367	106.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1,506	1,506	3,018	1,512	100.4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1,048	1,030	2,041	993	94.8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 (R&D)	4,200	4,200	7,325	3,125	74.4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21,973	21,973	37,548	15,575	70.9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정보화)	9,267	9,267	14,993	5,726	6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1,408	11,408	18,403	6,995	61.3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3,237	3,237	4,954	1,717	53.0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51	151	231	80	53.0
	과표양성화를위한시기표준액조사	2,376	2,141	3,589	1,213	51.1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1)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1,605	1,605	2,417	812	50.6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400	2,400	3,600	1,200	50.0
	재난대책비(보조)	100,035	100,035	150,035	50,000	50.0
	과거사관련사업지원	9,159	9,159	13,683	4,524	49.4
	정부조직진단관리	918	887	1,338	420	45.8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 (R&D)	6,200	6,200	8,900	2,700	43.5
	풍수해보험	25,351	25,311	36,371	11,020	43.5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3,365	13,355	18,134	4,769	35.7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4,292	4,292	5,775	1,483	34.6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750,000	750,000	1,000,000	250,000	33.3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 (R&D)	2,400	2,400	3,200	800	33.3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 (정보화, ODA)	4,264	4,252	5,628	1,364	32.0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181,010	181,010	193,554	12,544	6.9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5개)	특수상황지역개발	205,045	205,045	216,488	11,443	5.6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617,787	617,787	682,013	64,226	10.4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476	3,476	9,165	5,689	163.7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2,767	2,767	3,823	1,056	38.2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4,900	4,900	8,385	3,485	7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1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문제점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하나로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을 설정하고 그 주요 내용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존 정부의 제도적 제약과 부처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경제 발전에 민·관이 함께 기여·성장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①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②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 전환, ③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④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의 4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제별 주무부처가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실천과제]

연번	실천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1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2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 전환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통계청
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
4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의 36개 내역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b>실천과제 ①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b>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시설물, 공터, 건물내부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등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여 주소정보 공유체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통합주소체계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도화된 주소체계 기반의 주소정보 관리
<b>실천과제 ②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b>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 범정부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공공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 현안에 대응 - 공무원의 데이터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sup>1)</sup>	-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수준평가 실시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정책연구	- 전자정부 기본계획 및 연동계획 수립·추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방향성과 모델 재정립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운영 - 본인이 원하는 플랫폼에서 개인별 행정서비스와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지갑24” 구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강화
<b>실천과제 ③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b>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개방 확대
디지털서비스 개방	- 정부 공공서비스를 민간 웹·앱에서 이용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 운영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정부24)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모바일 신분증 구축·운영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비 등

주: 1) 내역사업 중 일부는 실천과제 ②에, 나머지 일부는 실천과제 ③에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 간 공공데이터 및 공공서비스의 칸막이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서비스를 민간 웹·앱에 연동하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별로 데이터·서비스를 독점적·분절적으로 보유·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개발·제공 제약 등 기존 정부의 공공 데이터·서비스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0억 6,600만원 증액된 1,5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률
<b>합계</b>	<b>84,206</b>	<b>152,272</b>	<b>68,066</b>	<b>80.8</b>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3,365	18,134	4,769	35.7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통합주소체계 구축	0	6,701	6,701	순증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20,436	22,734	2,298	11.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sup>2)</sup>	3,477	10,062	6,585	189.4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정책연구	0	1,000	1,000	순증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2,050	4,417	2,367	115.5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2,064	840	△1,224	△59.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sup>3)</sup>	18,885	28,222	7,544	39.9
디지털서비스 개방	3,237	4,954	1,717	53.0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 운영	6,933	8,591	1,658	23.9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8,064	25,670	17,606	218.3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5,695	13,552	7,857	138.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0	7,395	7,395	순증

주: 1)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사업에 미포함된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제외한 값임

2) 실천과제 ②에 포함된 내역사업 예산만 반영

3) 실천과제 ③에 포함된 내역사업 예산만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 가. 현황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p>1)</sup>을 제정하고 (2022.7.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구현’ 사업<sup>2)</sup>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0	0	0	7,395	7,395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19명을 합하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파견·겸임 공무원·임직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직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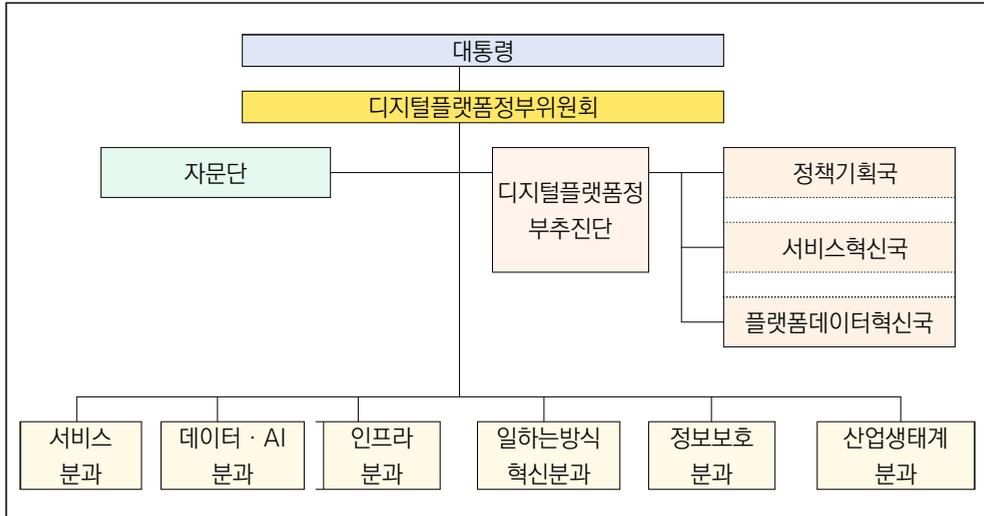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연계 및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코드: 일반회계 2031-505

와 자문단을 두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추진체계 및 구체적 로드맵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의 방향성·전략이 불분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조정·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각 세부과제별로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 등으로 상이하고 과제별로 복수의 부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확립되고 중장기적·통합적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에 출범하여, 2023년도 예산안은 각 부처별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편성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각 부처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디지털 플랫폼정부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제약, 부처별 칸막이 등으로 인해 한계</li> <li>-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공유·연계·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에 민·관이 함께 기여·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li> </ul>
과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협업과 디지털화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li> <li>-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li> <li>- 민·관 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li> <li>-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체계 마련</li> </ul>
실천과제	①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②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③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④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상 실천과제 ① ~ ③에 속하는 사업들로, 각 실천과제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타 부처 소관의 관련 사업들이 함께 속해 있어 이들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복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실천과제]

연번	실천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1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2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통계청
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
4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추진체계가 미확립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중 아직 그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면밀히 수립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중 다수는 계속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신규 계획 수립 시 계획 간 관계·위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전자정부의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은 「전자정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sup>3)</sup>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은 전자정부 구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으로, 현재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시행 중이다.

3)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안전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중 다수는 계속사업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일부 사업내용이 확장되거나 과업의 추진시기가 앞당겨진 측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신규사업 여부]

사업명(내역사업 기준)	신규 여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관련 9개 내역사업	계속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통합주소체계 구축	신규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계속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	계속
데이터기반 행정 역량 지원	계속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계속
디지털·지능형 정부 전환을 위한 서비스 재설계	신규
국민비서 운영	계속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신규
마이시포털 서비스 구축 BPR/ISP	신규
공공모바일 서비스 운용 효율화 및 활성화	계속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인프라 확충	계속
모바일 전자정부 유지보수 및 운영	계속
대민용 모바일 서비스 보안성 강화	계속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계속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	신규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계속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Open API 플랫폼구축	계속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반 조성 및 운영	계속
행정서비스통합 플랫폼 구축 BPR/ISP	신규
통합포털 유지보수 및 운영	계속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산	계속
행정서비스 통합 운영 지원	계속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속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속
공공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계속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계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신규

주: 내역사업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목표,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로드맵을 2023년 1분기 내에 수

립할 예정이므로, 새로 수립되는 계획과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체계성이 저해되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① 지능형 서비스 혁신, ② 데이터 행정 강화, ③ 디지털 기반 확충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마이데이터 확대, 모바일 신원증명 확산,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등을 핵심 세부 과제로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중 다수는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sup>4)</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립되는 것인 반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최상위법의 지위를 갖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즉,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최상위계획으로서 수립된 전자정부 기본계획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새로운 계획보다 높은 위계를 갖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신규 계획의 내용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충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sup>5)</sup>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과의 관계·위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계를 확립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 관련 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면, 주소체계 고도화 및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통합주소체계 구축과 같은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이지만 전자정부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다만,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 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경우 법률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신규 계획 간 관계·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1-2.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필요

### 가. 현황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sup>6)</sup>은 온·오프라인 신원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국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선도하고 비대면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억 3,800만원 증액된 22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20,766	21,973	21,973	37,548	15,575	70.9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805	7,405	7,405	22,043	14,638	197.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관련 IS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2020년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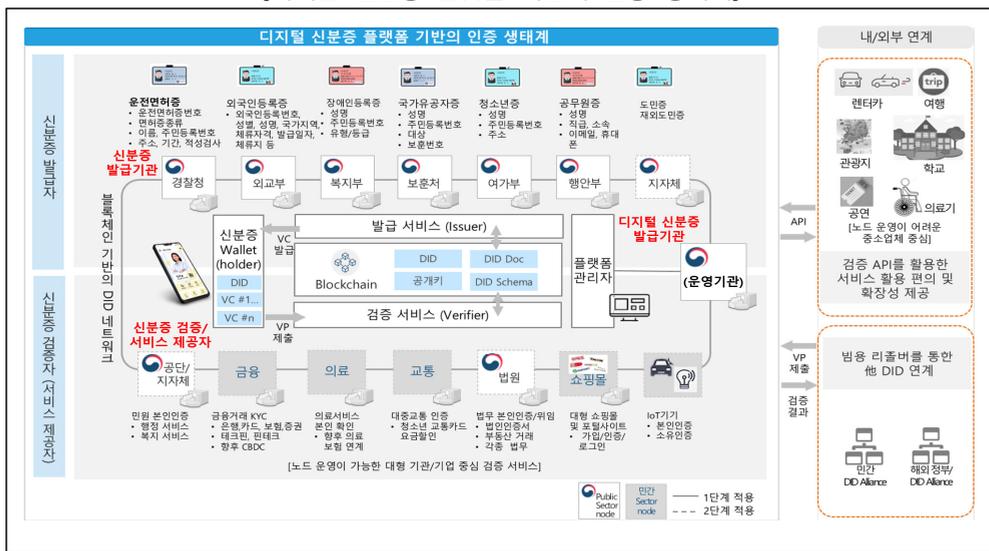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220억 4,300

6) 코드: 일반회계 2033-500의 내역사업

만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발급시스템 구축 개발비용, HW 및 SW 구매비용, 발급장비 설치비용 등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준비를 위한 예산 총 1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당초 정부가 수립한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도민증 등 7종류의 신분증이 모바일로 제공될 계획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및 기술적 구현성에 대한 검토와 각 시스템 간 연계방식에 대한 검토와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신분증 플랫폼 기반의 인증 생태계]



자료: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정보화전략계획(ISP)'

그런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당초 ISP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ISP는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일정 등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를 고려하면 ISP를 거치지 않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이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발급받는 신분증으로서 모바일 제공에 따른 영향이 다른 신분증보다 크고, 주민등록시스템 및 주민등록전산

정보센터와의 연계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이를 발급하고 있어 장비 도입·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이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2018년 수립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ISP에서 이를 검토하였으며,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도 이미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달리 생체정보의 일종인 지문정보<sup>7)</sup>가 포함되어 있고,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서 보다 높은 보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생체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인증체계 및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는 운전면허증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또한, 2018년 수립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ISP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검토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되어 서비스 간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점, 별도로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이 구축되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다른 모바일 신분증 간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연계 등과 관련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후 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어 서비스 초기인 상황이므로, 이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안성·안정성, 국민 불편, 개선사항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7)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도 지문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신분증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운전면허증의 경우,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모바일 발급이 시작되어 2022년 9월초 기준 약 35만 건이 발급되었다.

또한, 기술적·제도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2022년 6월 29일부터 시작된 상황으로, 8월 중순까지 약 13만명이 등록하여 93만 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비교]

구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성명, 주소 등) 및 성인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 * 신분증은 아님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음 - 정부24 앱에 접속, 본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신분 확인 - 1인 1단말에서만 이용 가능	별도의 발급 절차 필요 -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스마트폰에 저장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저장	개인정보(주민등록증 수록사항)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음 * 서비스 제공시마다 주민등록증 시스템에 연계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모바일용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 * 필요시마다 이를 불러내어 사용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5조 개정(22.1.11. 공포, 22.7.12. 시행)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주민등록법 개정 필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규정 신설

자료: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과 유사성이 있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개선점과 사용자의 평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있어 유효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로, 이용자 수가 적고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서비스의 문제점·개선점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sup>8)</sup>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그에 대한 충분한 환류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21년 11월),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분 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의 모바일 전환에 따른 보안성·안정성 등을 검토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sup>9)</sup>

**셋째, 「주민등록법」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4조<sup>10)</sup>는 명시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조문 등을 참고할 때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에 따라 모바일 주민

8)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에 등록된 이용자 평가 등을 참고하면, 모바일 신분증 앱의 불안정성, 실제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 제약,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의 번거로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 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행정안전법안심사소위원회(21.11.23.) 회의록 참고

10)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접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발급받는 신분증으로서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정보의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큰 상황으로, 그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복수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sup>11)</sup>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11월 이들 법률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성·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제도개선과 관련 있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 지문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나,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 여부에 따라 지문정보의 수록 여부가 결정되고, 민감정보인 지문정보의 수록 여부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구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주민등록법」에 그 법적 근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정보의 종류를 규정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311),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098),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106)

### 1-3. Any-ID 서비스의 보안성 및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문제

#### 가. 현황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sup>12)</sup>은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원패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6,800만원 증액된 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20,766	21,973	21,973	37,548	15,575	70.9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33	659	659	3,627	2,968	450.4

주: 1)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Any-ID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 ID를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보안성에 우려가 있고 현재 제공 중인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안성·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원패스 서비스<sup>13)</sup>란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로, 2023년 예산안은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6억 6,800만원과 Any-ID 구축을 위한 개발비 등의 비용 2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Any-ID란 하나의 아이디를 통해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로,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원패스 외에 민간 플랫폼의 ID 로그인, 간편인증 등

12) 코드: 일반회계 2033-500의 내역사업

13)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2년 6월 기준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236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가입자 수는 254만명이다.

을 이용하여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원패스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Any-ID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등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 플랫폼의 ID를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보안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Any-ID 도입에 따른 민간 플랫폼 ID 인증의 경우, 다수의 민간 플랫폼 ID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해당 플랫폼의 보안성은 각각의 민간 사업자들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안의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민간 플랫폼 자체의 보안성 문제 외에도, 최근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사이트와 유사하게 디자인된 허위 사이트 등을 통해 해킹, 정보유출이 이루어지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침해와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Any-ID 구축과 관련하여 2015년 초 수립한 '전자정부 차세대 인증체계 ISP' 외에 별도의 ISP 등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ISP의 경우 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sup>14)</sup>하여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그 유효성이 낮고 민간 플랫폼 ID를 활용한 인증 등에 대한 검토도 부재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Any-ID 구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 보안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SaaS 서비스의 보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성 관련 지침의 제약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15)</sup>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민간 플랫폼 ID는 정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보안요구 수준이 낮은 공공서비스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14) 전자정부 차세대 인증체계 ISP는 2014년의 정보통신사회 환경에서 당시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2015~2019년을 사업추진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15)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2.8., p.28 참조

그런데 주요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2차 인증을 거치는 민간 플랫폼 ID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디지털원패스,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생체인증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Any-ID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서비스의 보안성 및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발·제공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한 후 서비스 구축에 착수하는 것이 정보보안 및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방지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 1-4.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의 효과성 문제

### 가. 현황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sup>16)</sup>은 공공앱·웹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단위 기능별로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1,700만원 증액된 4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디지털서비스 개방	607	3,237	3,237	4,954	1,717	5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란 민간플랫폼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기차승차권 예약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기차승차권 예약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letskorail.com) 또는 코레일톡(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현재는 민간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T)를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요]



자료: 행정안전부

16) 코드: 일반회계 2039-504

## 나. 분석의견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 앱·웹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방에 따른 서비스 관리비용 증가 및 보안성 약화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개방에 따른 효과 및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은 개방 AP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차별로 개방 대상 공공서비스의 API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개방 API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26억 7,400만원과 공공서비스 API 9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 22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2년에는 개방 API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6종의 공공서비스 API를 개발하여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방 API 플랫폼 구축	기능 고도화	증설 및 운영관리		
서비스 개방	4종	9종	개방 확대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API 개발 대상 공공서비스]

시범서비스	소관 기관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주)에스알
자동차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휴양림 예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수목원
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항내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을 통해 민간 앱·웹과 공공서비스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민간 웹·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와 관련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해당 웹·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민간 웹·앱 이용자의 편의성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은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웹·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민간사업자가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개방된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민간 웹·앱이 연계될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되기보다는 다수의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 서비스 관리 비용 및 부담 증가, 보안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해 수행한 민간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 웹·앱과 관련성이 낮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요청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민간 수요조사(일부)]

민간	개방수요
A은행	휴양림, 캠핑장 등 예약
B은행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
C증권회사	각종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D은행	기차승차권 예매
E금융	국가자격시험 신청
F은행	노후차량 말소지원, 전입신고
G금융	국가자격시험 신청, 통관 진행상황 조회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 개방에 따라 금융회사 앱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그 연계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증진 효과는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비스 관리의 어려움 및 유사 피싱사이트<sup>17)</sup>의 운영 등에 따른 보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7) 금융거래 등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만든 인터넷 사이트이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민간 앱·웹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 이용자가 많은 민간 앱·웹 관련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이용자 수 증가 등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개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가가 개방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서비스 개방 필요성·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 개방의 효과성이 인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만 API 개발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도 사업 대상 공공서비스의 개방 필요성·적절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3년 사업 대상 물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수요와 관련된 민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중 개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서비스를 선정하고,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방 대상 서비스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3년 개방 대상 9종의 공공서비스 선정과 관련하여 2021년 일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각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시스템 등과 관련된 API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면 추가적인 관리부담이 발생하고, API 제공에 따른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 앱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 자체적인 플랫폼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의 개방수요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이 API 개발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민간 수요가 적은 서비스의 API가 개발되어 그

효과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폭넓은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수요를 파악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제로 개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도 사업 대상 물량 및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클라우드 전환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등

### 가. 현황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sup>1)</sup>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4억 5,400만원 감액된 34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33,057	318,241	256,741	112,284	△144,457	△56.3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	127,954	312,587	251,087	106,630	△144,457	△57.5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56,954	240,193	178,693	34,239	△144,454	△8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클라우드 미전환 물량이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조사 및 기관협의를 통하여 전환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파악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이에 따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036-507의 내역사업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의 세부내역

**큰 연차별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1만여 개의 정보시스템과 5만 8,000여개의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계획(2021.7.)]

(단위 : 개)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시스템 수	10,009	302	1,590	2,311	2,295	2,127	1,384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2021년부터 실제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의 연관서버가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전환 대상 시스템과 연계된 다수 시스템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2021년 클라우드 전환사업 미전환 물량]

(단위: 개)

구 분	대상 물량	미전환 물량			
		합계	내용연수 미도래 연관서버 존재	다수 시스템 연계,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	기관의 클라우드 이용료 부담
시스템 수	430	128	72	22	34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22년의 경우 사업대상 검토 등 사업 준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9월말 기준 동 사업 예산의 실집행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제2회 추경을 반영한 2022년도 예산액 1,786억 2,800만원 중 207억 9,600만원만 실집행되었다(실집행률 11.6%).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사업대상 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전년 대비 1,444억원이 감액된 342억 3,900만원만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동 사업에 따라 클라우드로 전환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조사 및 대상 확정은 2022년 9월말 기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동 사업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이 확인된 실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2022년 미전환 물량이 다량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도 예산 편성 이전 전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 파악과 사전조사를 통한 실수요 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동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미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사전조사와 실수요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3년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규모 및 사업물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히 실수요 확보를 위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전환 물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전환 물량 다수 발생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기존에 수립하였던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계획과 현재 사업진행 상황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사 등을 바탕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sup>1)</sup>은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억 2,100만원 증액된 7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비영리민간단체지원	7,745	7,242	7,242	7,463	221	3.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일부 단체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원대상 사업의 유형을 공고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은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르면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및 활동 실적, 신청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등이 주요 심사항목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40-3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심사항목]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0
사업내용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0
예산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10
가점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사업신청시 자율적자부담 반영 사업	+α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단체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반복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민간단체는 총 183개로, 그 중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는 37개에 불과한 반면, 2019년 이후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전체 지원대상 단체의 38%에 해당하는 70개로 나타났다.

[2022년 지원대상 단체의 2019~2022년 지원 횟수에 따른 구분]

(단위: 개)

구분	신규	2회	3회	4회
단체 수	37	39	37	7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반복적 지원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단체역량 및 사업내용 관련 항목의 배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및 그와 관련된 예산을 면밀히 수립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 대비 선정 건수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동일한 단체가 반복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신청 단체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이 각각 73.1%와 74.0%

로 나타났고, 2022년의 경우에도 64.4%로 나타나 신청한 단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단체가 실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 %)

연도	신청(A)	선정(B)	비율(B/A)
2020	305	223	73.1
2021	273	202	74.0
2022	284	183	64.4

자료: 행정안전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역량이 뛰어나고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동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단체에 대한 반복적 지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매년 국가적·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별도의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사업에 대한 반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사업’<sup>1)</sup>은 골목상권의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5억 9,900만원 증액된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경제활성화	607	694	665	2,394	1,700	245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	48	48	48	1,647	1,599	3331.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업소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 6,032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49-301

[연도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2.6.
업소 수	2,497	6,576	6,558	6,334	5,817	5,762	5,799	5,895	6,032

자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서류검토 등을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평균가격 미만 품목</li> <li>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1년간 가격 인하</li> <li>최근 6개월 이내 가격 동결 여부</li> <li>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li> </ul>
위생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방, 매장 및 화장실 청결도</li> <li>청결한 복장 착용 등</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자의 친절도</li> </ul>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 여부</li> </ul>

자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할 수 있고, 착한가격업소 정보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goodprice.go.kr)를 통해 제공되며,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정 표지판 제공,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위생 소모품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제도 운영의 효과성·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및 제도의 방향

**성·설계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16억 4,7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5억 3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개선비용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 2023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 95,700천원×1식 = 95,700천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5,895개소(‘21.12월기준)×850천원×30%(국고보조율)  
= 1,503,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 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30%를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말 기준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시·도에 교부할 예정으로, 각 시·도에서는 보조금을 시·군·구에 재교부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예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경우 제도 자체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그 운영 목적을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물가안정효과에 대하여 입증·측정된 바가 없고 효과의 전달경로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평균가격 미만의 품목을 판매하여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동결하여야 하므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효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조사·연구·분석 등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전국 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 업소 수 대비 착한가격업소 수를 고려한다면, 착한가격업소의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전체 착한가격업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음식점업인데, 2021년 기준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약 85만 개소인 것에 비하여 착한가격업소 수는 4,420개소로 전체 업소의 0.52%에 불과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운영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기에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선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업소의 가격 인하 유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sup>2)</sup>가 아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8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2)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의 검색·지도 관련 서비스

[연도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이용자 수]

(단위: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이용자수	81,514	97,603	132,453	145,548	75,497	86,263	38,438

자료: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경상적 지원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 활성화 가능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개소당 연간 85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아야 하며 지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높은 물가상승률<sup>3)</sup>을 감안하면, 제약에 대한 부담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지 않거나 지정 이후 가격 유지 등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 경상적 지원(연간 85만원 상당)만 존재하므로, 제약을 감수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sup>4)</sup>

3) 한국은행은 2022년과 2023년의 물가상승률을 각각 5.2%와 3.7%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8.25).

4) 이러한 유인 부족을 고려하면, 선의로 상품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업소의 임대료·재료비용 등 상품의 원가가 낮아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과 기여도와 무관하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사업자의 혜택 및 제약]

혜택	제약
지자체별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및 방역관련 소모품 지원 등	지역 평균 대비 낮은 가격 책정 일정 기간 가격 유지
착한가격업소 표시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저조한 홈페이지 이용자 수 및 민간서비스 와의 연계 부족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동 사업의 제도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지원규모의 변화 등에 따른 실제 사업자의 참여의사를 조사하는 등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이러한 사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하면,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 자체의 효과성·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경상적 지원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한 분석·검토를 수행하여 제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가. 현 황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sup>1)</sup>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4,800만원 감액된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2,832	3,233	3,149	2,585	△648	△2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이 2023년 3월 19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운영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기한은 2023년 3월 19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운영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점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지방분권법상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법률 제15501호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시행일 2018.3.20.) 부칙 제2조(위원회 존속기간)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출장여비, 공공요금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다.

[2022~2023년도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내역	2022	2023
인건비(110목)	전문임기제 12명 공무직 5명 인건비	1,023	1,034
일반수용비(210-01)	회의참석수당, 안전사례검토비, 회의자료 발간 등	1,034	74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우편, 통신요금, TV 수신료	3	8
특근매식비(210-05)	구성원 특근매식비	29	29
임차료(210-07)	워크숍, 토론회를 위한 장소, 차량 임차료	84	77
유류비(210-08)	차량유류비	12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전산서버, 네트워크 유지비 등	75	69
복리후생비(210-12)	직원 선택적 복지, 생일 축하금	11	11
기타운영비(210-16)	과 운영비 등	31	31
여비(220목)	국내, 국외여비	126	113
사업추진비(240-02)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73	48
관서업무추진비(240-01)	위원장, 기획단 대외업무협의 등	37	36
직책수행경비(250-02)	구성원 월정직책금	125	12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또한,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이 2023년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와 신규 내역사업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3년도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 정책연구(일반연구비, 260-01목) :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과제(5,000만원)</li> <li>- 지방자치발전방안 연구용역 소과제(5,000만원)</li> </ul> </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일반수용비, 210-01목) :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2억 5,000만원)</li> <li>- 지자체 특례심의위 운영(5,000만원)</li> </ul> </li> </ul>
---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sup>2)</sup>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2022.10.24.), 해당 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기한이 2023년 3월까지로 명시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 입법예고 단계인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sup>3)</sup>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이 자치분권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통과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해당 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즉시 폐지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최대 3개월간 존속하게 될 예정이므로,<sup>4)</sup>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2개월분의 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3) 행정안전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2.12.31. 국회 제출 예정이다. 그러나 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정 이전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해당 법률안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이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이라는 점에서 심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법률안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기구로 통합되는 경우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기구의 운영예산은 법률상 별도 존속기한이 없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운영예산<sup>5)</sup>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와 및 그 사무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12개월분의 운영비 및 신규 연구과제·내역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분권위원회와 및 그 사무기구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법률 제1885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부칙 제6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지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두 위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건비(균특회계 3334-1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원(균특회계 3334-302) 사업에 편성

## 가. 현황

제주4·3피해보상 사업<sup>1)</sup>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22.4.12. 시행, 이하 “「4·3사건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25억 4,400만원 증액된 1,93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제주4·3피해보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제주4·3피해보상 (보상금 등)	-	181,010	181,010	193,554	12,544	6.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제주4·3피해보상 사업은 피해보상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 심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 속도를 고려하여 연차별 보상금 지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4·3사건법」 개정과 함께 2022년부터 편성된 사업으로,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지급결정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3사건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431-306

회복위원회(이하 “4·3 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중 이미 보상을 받은 자와 국가 유공자 등을 제외한 인원으로,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총 10,20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 4·3 희생자]

(단위: 명)

구분	4·3 위원회 결정 희생자					지급 제외 대상 <sup>1)</sup> (B)	지급 대상 (A-B)
	합계(A)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		
인원	14,533	10,422	3,631	196	284	4,327	10,206

주: 1) 유족이 없는 희생자 및 이미 지원을 받은 국가유공자, 배·보상금 수령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3사건법」에 따르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5,000~9,000만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형벌의 정도에 따라 3,000~9,000만원이다.

정부는 2022.6.1.~2025.5.31.의 기간 동안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급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 예산도 5년(2022~2026년)에 균등하게 나누어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4·3사건법」의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2022년 보상금 지급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달분을 2023~2026년 예산에 나누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급인원	2,100	2,150	2,150	2,150	잔여 인원
예산 <sup>1)</sup>	181,010	193,500	193,500	193,500	잔여 보상금

주: 1)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가 정해짐에 따라 늦게 신청하는 자에 대해 지급되는 지연이자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은 과거 국가적 차원의 폭력으로 인하여 희생된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지급이 공정하고 신속

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사속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속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연차별 지급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3사건법」 개정이 늦어진 것과 함께, 가족관계 확인 등 사실조사 과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른 것이다.

[보상금 지급 절차]

구분	주체
보상금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및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위원회 심의·의결	행정안전부
↓	
통지	제주특별자치도
↓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신청 대상자 2,100명 중 1,937명이 신청하였으나 아직 4·3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유가족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액 1,810억원은 현재 전액 미집행 중인 상황이다.

보상금 신청자를 지급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2022년 9월말 기준 현재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신청자는 952명이나, 4·3위원회 심의는 후유장애 희생자 79명과 수형인 희생자 5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2022.9.27.), 자료보완 및 재조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지급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심사 초

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심사속도가 높아져 당초 계획대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망자의 경우 희생자 1명당 보상금 지급신청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많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속인 파악 및 개인별 지급액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초기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상결정을 위한 심사인원을 확충하고 조사방법·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속도를 고려하여 연차별 보상금 지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가. 현 황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sup>1)</sup>은 부산, 대전, 창원 등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의 기념건축물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1,800만원 증액된 10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9,280	11,408	11,408	18,403	6,995	61.3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2,146	5,604	5,604	10,922	5,318	94.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및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2023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각 사업별로는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사업을 위해 26억 3,200만원,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해 38억 5,200만원,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사업을 위해 4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435-300의 내역사업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2023년도 예산안]

1)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 잔여사업비 10,526백(공사비 9,888백, 감리비 등 638백) × 50% × 국고 보조율 50% = 2,632백만원
2) 대전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 잔여사업비 7,704백(공사비 7,256백, 감리비 등 448백) × 100% × 국고 보조율 50% = 3,852백만원
3)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 잔여사업비 7,397백(공사비 5,897백, 감리비 등 1,500백) × 60% × 정액보조 = 4,438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국공유지 교환 등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도 예산 실적행률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사업의 2020년과 2021년 실적행률은 각각 1.6%와 32.4%로,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연속적인 실적행 부진이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에도 9월말 기준 실적행률이 37.0%로 사업지연 및 실적행 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사업은 그 실적행률이 6.9%로 특히 저조한 상황이다.

[ 2020~2022년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실적행 현황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계	1,126	1,126	18	2,146	3,254	1,053	5,604	7,804	2,891
부산	315	315	10	661	966	207	661	1,420	98
대전	315	315	-	504	819	315	1,679	2,183	760
창원	496	496	8	981	1,469	531	3,264	4,201	2,033

주: 2022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사업지연에 따라 각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도 변경되었는데, 2022년 5월 기준 부산 민주공원 건립사업의 경우 총 사업기간이 1년,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의 경우 6개월 연장되었다.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 변동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기간	
		당초	변경(22년 5월)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총 사업기간	`20. 1~`23.12	`20. 1~`24. 11.
	- 기본 및 실시설계	`21. 1.~`21. 5.	`21.10.~`22.10.
	- 착공 및 준공	`21. 6.~`23. 9.	`22.12.~`24. 11.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총 사업기간	`19. 12.~`23. 6.	`19. 12.~`23. 12.
	- 기본 및 실시설계	`20. 11.~`21. 7.	`21. 9.~`22. 6.
	- 공사입찰 및 계약	`21. 9.	`22. 9.
	- 착공 및 준공	`21. 10.~`23. 6.	`22. 9.~`23. 12.

자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건립사업 연차별 추진계획(국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총사업비	6,900	315	661	661	3,325	1,938
	- 설계비	315	315	-	-	-	-
	- 건축공사	4,921	-	617	517	2,460	1,327
	- 전시공사	1,095	-	-	100	548	447
	- 감리비	462	-	43	43	231	145
	- 예비비	107	-	1	1	86	19
대전3·8 민주의거 기념관	총사업비	6,350	315	504	1,679	3,852	-
	- 설계비	315	315	-	-	-	-
	- 건축공사	4,432	-	-	788	3,644	-
	- 전시공사	1,300	-	504	796	-	-
	- 감리비	288	-	-	92	196	-
	- 예비비	15	-	-	3	12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지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전의 경우 공사입찰 및 계약이 2022년 9월에 완료되어 같은 달부터

공사가 착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9월말 기준 공사입찰 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11월에 이르러서야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공고 후 공사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22년 말 또는 23년 초에 이르러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3년도 예산안은 잔여사업비를 전액(국비 38억 5,200만원) 반영하고 있어, 당초 21개월로 계획되었던 공사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하여야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의 경우에도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대전과 마찬가지로 공사발주 전 심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입찰공고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한 바와 같이 2022년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각 사업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재난대책비<sup>1)</sup>는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고,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재난대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대책비	842,500	100,035	100,035	150,035	50,000	5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재난대책비는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출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한 재난지원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재난대책비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 폭발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대책비를 지급하고, 피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 3,500만원을 재난대책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734-300

실제로, 2020년 이후 당해 연도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상황으로, 2020년도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360억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500억원, 2022년도에는 1,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1,500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2020~2023년도 당해 연도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복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안)
전체 예산액	436,000	820,000	100,000	150,000
당해 연도 재난대책비 <sup>1)</sup>	36,000	50,000	100,000	150,000

주: 1)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재난대책비 4,000억원, 2021년도의 경우 전년도 수해피해 복구비 7,700억원을 제외한 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재난대책비를 통해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재난대책비의 경우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난대책비의 본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재난대책비의 경우 사전에 그 소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해당 연도의 재난피해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였을 때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도의 경우 집중호우·태풍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에 총 7,253억원이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되었으나, 2021년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700억원만 지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지원에 어려움이 있

어, 재난대책비의 본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sup>2)</sup>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여 50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것은 태풍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9월 7일이였다.<sup>3)</sup>

이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와 유사한 속도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과 동시에, 신속한 재난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 확대가 아닌 재난복구계획의 신속한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대한 재난대책비 교부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22.9.6.	태풍 힌남노 한반도 통과
2022.9.7.	예비비(500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9.16.	재난대책비 중 일부(185억원) 선교부
~2022.10.	재난복구계획 확정 및 재난대책비 교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난대책비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3) 9월 6일 예정되었던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하여 개의한 것이다. 다만, 2022년 9월말 기준 재난복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난복구 절차에 따르면 재난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 재난대책비가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월말 기준 예비비를 통해 편성된 500억원 중 185억만 지자체로 선교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10월 초 재난복구계획 확정 이후 교부될 예정이다.

예산 및 법정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sup>4)</sup>과 재해구호기금<sup>5)</sup>을 통해 시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초 누적적립액	상반기 지출액	상반기 잔액
재난관리기금	광역자치단체	27,380	13,622	13,758
	기초자치단체	11,981	1,926	10,055
	소계	39,361	15,548	23,813
재해구호기금	광역자치단체	16,102	12,273	3,829

주: 2022.6.30.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사전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책비의 특성상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난규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복구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 현 황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sup>1)</sup>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100만원 감액된 7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13,445	12,994	12,971	8,233	△4,761	△36.6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257	12,806	12,796	7,895	△4,901	△3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동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처음 편성·추진되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에 따르면 국가 단위에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광역거점센터(대규모 비축시설)와 개별비축창고(소규모 비축창고)로 구성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734-314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초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원종료 시점도 미정인 상황이므로, 국비지원의 필요성·규모·기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지자체 보조금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광역거점센터와 개별비축창고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거점센터를 신축할 경우 그 비용의 70%를, 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할 경우 초기 1년간 운영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광역거점센터의 임차 운영에 대해서만 그 운영비의 50%를 1년간 한시지원하기로 계획하였던 것과 달리, 2023년부터는 신축 광역거점센터를 포함한 모든 광역거점센터에 대해 별도의 기한 없이 운영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 규모,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sup>2)</sup>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책임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인 지자체장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공동활용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자원 통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별 광역거점센터의 구축·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무배분에 따른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장기적·지속적으로 광역거점센터의 운영비용을 국고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무의 성격 및 지자체의 재정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담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3)

**둘째, 사업지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광역거점센터 임대료 등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상당 부분 이월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3년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임차 방식으로 광역거점센터 구축이 추진되어 2022년도 예산에 운영비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해 운영비 국고보조금 12개월분 중 일부만 집행되고 잔여분은 이월될 예정이다.

202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 방식으로 광역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경우, 광역거점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약이 7월 이후 체결되었다.

[2022년 지자체별 광역거점센터 구축사업(임차방식)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구축방식	예산액	실집행액	비고
합계	-	5,327	201	-
충북	임차	700	0	7월 용역계약 체결
충남	임차	700	0	입찰공고 추진 중
전남	임차	896	0	8월 용역계약 체결
경북	임차	700	0	9월 용역계약 체결

주: 동 사업 지자체 보조금 중 광역거점센터 구축 관련 보조금만 표기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각 지자체로 교부된 12개월분의 운영비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은 2023년에 광역거점센터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으로, 이월되는 운영비 국고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별 계약의 체결시점에 따른 운영비 이월 정도를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충남, 전남, 경북의 경우 예산안 편성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이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광역거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의원)」

시 예상하였던 것에 비해 계약 체결 시점이 더 늦어진 상황이다.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운영비 합계	국비	당초(예산안 편성 기준)	변경(안)	변경(안)에 따른 적정 예산
충북	267	134	6개월분	6개월분	134
충남 <sup>1)</sup>	178	89	4개월분	2개월분	45
전남	267	134	6개월분	5개월분	111
경북	267	134	6개월분	4개월분	89
합계	5,900	3,150			3,037

주: 1) 충남의 경우 2022년 11월에 계약이 체결된다고 가정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적인 사업지연 상황을 반영하여 2023년도 동 사업 예산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편성·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지진대비인프라구축 사업<sup>1)</sup>은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및 내진보강사업 제도화를 통하여 지진대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된 4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111	4,676	4,575	4,811	135	2.9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1,000	2,565	2,565	2,467	△98	△3.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은 높은 자부담률로 인한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참여의사 부족으로 사업대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sup>2)</sup>이므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24억 6,700만원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14억 6,700만원과 건축물의 내진성능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연구비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은 포항, 경주 등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위치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sup>2)</sup>의 내진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민간건축물 30개소에 대하여 내진공사비용의 2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할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731-307

2) 문화, 종교, 판매, 노유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계획이다(국비 10%, 지방비 1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2024년(3년)
- 사업대상 : 지진 발생지역 인근 민간건축물 중 지진으로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800여 개소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포함) 비용의 일부 직접 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30개소×4억 8,900만원×10%(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자료: 행정안전부

이들 민간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소유자에게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3) 동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높은 자부담률로 인한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참여 부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지원대상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건축물 32개소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업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집행액 (B)	집행률 (B/A)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1,565	1,565	-	-	-	0.0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지원대상 물량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800여 개소 중 30%가 사업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240개소를 산출하고, 이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민간건축물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내진설계기준 관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중 내진보강 필요가 예상되는 비율 40%를 적용한 96개소를 3년에(2022~2024년) 나누어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대상 물량 산출근거]

□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800개소 × 예상신청률 30% × 내진보강 필요 예상비율 40% = 96개소(연 32개소)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수요 확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sup>4)</sup>,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요조사 당시 사업참여 의사를 보이던 소유자들도, 이후 높은 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설명회와 방문설명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22년 9월말 기준으로도 아직 참여희망자가 없어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수요 확보 관련 수요조사 등 실시 내역]

- 수요조사 : 건축물 소유자 대상 1차 수요조사(21.10.), 2차 수요조사(21.12.)
- 사업설명회 : 포항시 주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설명회(22.3.)
- 방문설명: 건축물 소유자 대상 1차 방문설명(22.4.), 2차 방문설명(22.6)
- 업무협약: 수요발굴 대책마련을 위한 활성화 방안 논의(22.7.)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사업수요 미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립대학,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내진보강 수요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방문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업참여 희망자가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지원제도 하에서 예산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2022년도 예산안 행안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따라서 2022년 동 사업 지원대상 32개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023년에 추가로 30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사업의 수요부족 문제를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규모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인근지역의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비·지방비 지원비율 상향을 통한 사업수요 확보의 가능성·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로 인한 지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을 고려한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의 예산규모 조정 필요

### 가. 현 황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sup>1)</sup>은 1960년 준공된 창성동별관을 철거 후 재건축하여 정부청사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900만원 감액된 7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927	8,640	5,000	7,961	2,961	49.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은 문화재발굴 정밀조사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발굴 정밀조사의 진행상황 및 이후 사업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은 1960년에 준공되어 노후가 심하고 내진성능이 미비한 창성동별관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75억 1,200만원, 감리비 4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기존 창성동별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안전성이 'D 등급', 내진성능이 '붕괴위험'으로 평가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sup>2)</sup> 당초 계획에 따른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231-303

2) 안전등급(5단계):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성능수준(4단계): 거주가능(IO), 인

면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sup>3)</sup> 과정에서 유구<sup>4)</sup> 및 유물이 발견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간 및 연차별 추진 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2021~2022년 연차별 투자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1년 말	건설비	29,976	143	1,024	560	1,002	8,640	18,607	-
	기본설계비	354	140	214	-	-	-	-	-
	실시설계비	781	-	781	-	-	-	-	-
	공사비	27,065	-	-	544	951	8,120	17,440	-
	공정률(누적)	-	-	-	2%	6%	36%	100%	-
	감리비	1,673	-	-	-	49	500	1,124	-
	시설부대비	113	3	29	16	2	20	43	-
22년 3월	건설비	29,976	143	1,024	560	1,002	8,640	14,394	4,213
	기본설계비	354	140	214	-	-	-	-	-
	실시설계비	781	-	781	-	-	-	-	-
	공사비	27,055	-	-	544	879	8,120	13,527	3,985
	공정률(누적)	-	-	-	2%	6%	36%	86%	100%
	감리비	1,673	-	-	-	121	500	836	216
	시설부대비	113	3	29	16	2	20	31	12
22년 8월	건설비	33,510	143	1,024	560	1,002	5,000	7,961	17,820
	기본설계비	354	140	214	-	-	-	-	-
	실시설계비	781	-	781	-	-	-	-	-
	공사비	30,100	-	-	544	879	4,682	7,512	16,483
	공정률(누적)	-	-	-	2%	5%	20%	45%	100%
	감리비	2,156	-	-	-	121	300	433	1,302
	시설부대비	119	3	29	16	2	18	16	35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O)로 구분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표준국어대사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9월~10월 진행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과 함께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1년 연장되었고, 문화재의 추가 발굴로 인해 2022년 3월까지로 예상하였던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이 다시 한 번 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의 집행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예산현액 12억 8,600만원 중 9억 2,700만원만 집행되었고(집행률 72.1%), 2022년의 경우 예산현액 53억 1,8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되었다(집행률 0.1%).

[2020~2022년도 사업 예산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4,629	4,629	-	△433	-	4,196	3,765	89.7	284	147
2021	1,002	1,002	284	-	-	1,286	927	3.4	318	41
2022 <sup>1)</sup>	8,640	5,000	318	-	-	5,318	3	0.1	1,099	-

주: 1) 2022년의 경우 8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의 집행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예산현액 12억 8,600만원 중 9억 2,700만원만 집행되었고(집행률 72.1%), 2022년의 경우 예산현액 53억 1,8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되었다(집행률 0.1%).

특히 2022년도의 경우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36억 4,000만원 감액되었음에도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에 따라 예산이 300만원만 집행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5) 행정안전부가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안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바 있어,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올해 7~8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안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9월말 기준 문화재 발굴조사가 아

5) 2022년도 예산안 행안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직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11월경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후 사업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 착공이 가능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절차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양과 종류에 따라 사업시행자(행정안전부)는 그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검토와 월 1회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존조치<sup>6)</sup>를 위해 설계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의 진행경과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이후 사업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 및 연차별 투자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 가. 현 황

기타경상이전수입<sup>1)</sup>은 국고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과오지급금 회수액, 전세보증금 반납금 등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3억 8,200만원 증액된 47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46,245	46,060	46,060	47,442	1,382	3.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및 미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 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에 불가인상률을 곱하여 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 6,000만원에 불가상승률 3%를 곱한 47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분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sup>2)</sup> 및 「국고보조금 통합

황진술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9-596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관리지침」<sup>3)</sup>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금 교부 취소분 등을 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분도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이듬해인 2021년에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4억 1,600만원에 물가상승률 3%를 곱한 값인 447억 1,8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812.7%에 해당하는 3,634억 3,700만원이었다.

[2020~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2020	43,416	43,416	43,416	59,374	49,189	82.8	10,185	0
2021	44,718	44,718	44,718	363,437	246,245	67.8	117,191	0
2022	46,060	46,060	46,060	194,148	72,971	37.6	121,177	0

주: 1) 202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행정안전부가 예산 산출 과정에서 전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규모 및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등 예산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만을 곱해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것으로, 이미 상당 규모의 미수납액이 존재한다는 점, 2020~2021년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월됨에 따라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에도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2020~2022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7월말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1,835,190	2,925,474	3,473,501	3,562,883	2,258,897	1,711,210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및 미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의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101억 8,500만원이었으나,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미수납액이 1,211억 7,700만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추경 편성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미반납 지자체에 대한 독촉 등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미반납은 관련 법령·지침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반납을 독려하는 한편 미반납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 등<sup>4)</sup>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혁신처



## 1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9조 8,06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30억 6,800만원(2.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9억 6,2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 19조 8,005억 7,6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8,111	60,568	60,568	5,962	△54,606	△90.2
- 일반회계	68,111	60,568	60,568	5,962	△54,606	△90.2
기 금	16,517,317	19,182,902	19,182,902	19,800,576	617,674	3.2
- 공무원연금기금	16,517,317	19,182,902	19,182,902	19,800,576	617,674	3.2
합 계	16,585,428	19,243,470	19,243,470	19,806,538	563,068	2.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4조 6,992억 7,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2,908억 500만원(10.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060억 1,3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 24조 4,932억 5,7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96,876	204,514	202,523	206,013	3,490	1.72
- 일반회계	196,876	204,514	202,523	206,013	3,490	1.72
기 금	21,128,784	22,255,942	22,205,942	24,493,257	2,287,315	10.3
- 공무원연금기금	21,128,784	22,255,942	22,205,942	24,493,257	2,287,315	10.3
합 계	21,325,660	22,460,456	22,408,465	24,699,270	2,290,805	10.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가. 세입·세출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59억 6,2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46억 600만원(90.2%) 감소하였다.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8,111	60,568	60,568	5,962	△54,606	△90.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조 1,138억 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357억원(19.5%) 증가하였다.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65,573	4,278,108	4,226,117	5,113,808	835,700	19.5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나. 기금운용계획안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만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8조 9,508억원 2,500만으로 전년 대비 2조 2,057억 5,900만원(8.2%) 증가하였다.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23,203,428	26,795,066	26,745,066	28,950,825	2,205,759	8.2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다.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4조 9,077억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3년도 인사혁신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②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③ 미래 행정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④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 등에 주력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혁신처에 대한 시험위탁의 근거가 없고, 위탁범위도 시행령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주관의 경력채용 시험 운영 방식 개편방안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경력채용 시험 오류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발생, 수험생 불편 및 경력 채용 시험 담당자의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하며, 정부 주관 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지시설 중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영업 손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시설유지비 등의 고정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바,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안보상록호텔의 비용절감 등 조속한 매각을 위해 경영혁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사업 1개가 있다.

일반회계의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사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과천) 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청소 근로자(91명)과 식당·행정 근로자(1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이관된 44억 2,100만원, 반영되었다.

[2023년도 인사혁신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국가인재원 지원인력 운영	4,421
합 계		4,421

자료: 인사혁신처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업, ‘교육개발평가지원’, ‘청사임차운영’ 사업 등 3개 사업, 공무원연금기금에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2개 사업, 총 5개 사업이 있다.

일반회계의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사업은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내역이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이관되었고,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공무원 총조사 실시’ 내역이 추가되어 6억 3,400만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원 반영되었다.

일반회계의 ‘교육개발평가지원’ 사업은 공직가치·국가핵심 정책 교육 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 반영되었다.

일반회계의 ‘청사임차운영’ 사업은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선정(22.7월)에 따라 2023년 세종청사(17동)로의 청사 이전 등을 위한 예산으로, 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53억 4,500만원 반영되었다.

기금의 '퇴직급여' 사업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금수급자 누증(607천명→635천명) 등을 반영하여 2조 5,81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9조 7,596억 8,000만원 반영되었다.

기금의 '퇴직수당' 사업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으로, 퇴직수당 평균 지급단가 증가(57백만원→59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268억 5,500만원이 증액된 2조 7,417억 7,600만원 반영되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506	506	1,140	634	125.3
	교육개발평가지원	473	473	625	152	32.1
	청사임차운영	2,185	2,185	5,345	3,160	144.6
공무원 연금기금 (2개)	퇴직급여	17,412,963	17,177,863	19,759,680	2,581,817	15.0
	퇴직수당	2,529,821	2,714,921	2,741,776	26,855	1.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수탁출제의 법적근거 정비 필요

#### 가. 현황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sup>1)</sup>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해소 및 국가자원 절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하고 수탁출제의 수입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00만원 증액된 2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958	1,991	1,991	2,022	31	1.6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혁신처에 대한 시험위탁의 근거가 없고, 위탁범위도 시행령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동 규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기관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642-650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시험 출제업무 소관의 근거로 규정<sup>3)</sup>하고 있고, 2022년 현재 17개 시·도의 위탁을 받아 지방직 7급, 9급 공채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탁기관별 위탁과목 현황]

(단위: 개, 2022년 9월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시·도	56	59	55	63	53	58	52	42	7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59	61	61	59	58	63	59	45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시·도 교육청	26	24	10	22	16	16	9	11	2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6	20	20	24	14	16	24	11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2조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인사위원회에 8급·9급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이하 승진·전직 시험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혁신처에 대한 시험실시 위탁근거는 없고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sup>4)</sup>.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인재채용국) ⑦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4) 「지방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

7급, 9급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공통과목이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인사혁신처에서 수탁출제하고 공동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인사혁신처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실시의 위탁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에서 법률보다 위탁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7·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7·8·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⑥ 시·도회의의 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가. 현황

국가시험시행 사업은<sup>1)</sup>은 5급·7급·9급 공채, 민간경력자 채용 등 국가시험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0.8%) 감액된 13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가시험시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시험시행	15,743	14,021	14,021	13,911	△110	△0.8
국가시험 시스템 관리	424	525	525	310	△215	△40.9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주관의 경력채용 시험 운영 방식 개편방안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경력채용 시험 오류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발생, 수험생 불편 및 경력 채용 시험 담당자의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하며, 정부 주관 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 시험과 달리 각 부처 주관의 경력채용의 경우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원서접수·서류심사 등의 채용 업무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채용은 경력·학위 요건 등이 다양하고 일부 부처 경력직 모집에 1,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경우<sup>2)</sup>에도 경력·학위·자격 등 응시요건을 채용 담당자가 개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

2) 환경부의 환경직류 의 경우 30여명 선발에 통상 1,000명 이상 지원, 산림청의 임업직의 경우

별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채용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합격자 발표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원서·서류 접수 등의 채용과정이 등기·우편접수 등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험생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 인사감사 결과 최근 5년간('17년~'21년) 181건의 채용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오임용 사례가 49건으로,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sup>3)</sup>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현재 채용오류 20건 중 오임용 8건으로 경력채용 시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별 경력 채용 오류 유형 및 사례]

구분	오류 사례 등	지원인원
A 부처	제출 서류 확인 과정 지연으로 합격자 발표 일정 지연	10명 선발, 약 1,000명 지원
B 부처	담당자의 가산점 계산 오류로 서류전형 합격자가 변경	연 2회, 약 400~500명 지원
C 부처	공고별 응시인원, 합격자 현황 등 통계관리시 상당 시간 소요	30명 선발, 약 1,000명 지원
D 부처	담당자 가산점 계산 오류로 서류전형 합격자 변경	
기타	표준화되지 못한 불명확한 공고문 게시로 수험생 혼란 야기, 담당자 실수로 응시자 제출 서류 무단 파기,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채용담당자가 임의 조정	

자료: 인사혁신처

30명 선발에 통상 700~1,000명 이상 지원

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6349&ref=A>

각 부처 주관의 경력 채용을 현행과 같이 진행하는 것은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국가 주관 시험의 오임용 발생은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시스템 구축 등 경력채용 시험을 위한 개편방안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경력채용 시험 오류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발생, 수험생 불편 및 경력 채용 시험 담당자의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하며, 정부 주관 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

복지시설운영 사업<sup>1)</sup>은 천안리조트 및 화성·남원·김해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무원복지 증진 및 기금증식 기여를 위한 것으로, 2023년 계획액은 전년대비 8억 3,300만원이 감액된 48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복지시설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복지시설운영	39,336	49,260	49,260	48,427	△833	△1.7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나. 분석의견

복지시설 중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영업 손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시설유지비 등의 고정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바,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안보상록호텔의 비용절감 등 조속한 매각을 위해 경영혁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동 사업을 통해 천안리조트, 화성·남원·김해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시설의 운영목적은 공무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는 것과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기금수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61-341

[공무원 복시시설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천 안 리조트	화 성 골프장	남 원 골프장	김 해 골프장	수안보 상록호텔
일반 현황	영업개시	-	'97. 3.10.	'06.11.3.	'12. 9.22.	'14. 7.12.	'89. 3.24.
	취 득 가	3,552	1,327	1,028	392	608	197
	장 부 가	4,964	1,796	1,720	540	769	139
	토 지(m <sup>2</sup> )	539.4만	167.5만	158.8만	114.5만	97.3만	1.3만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런데 최근 5년간 각 복지시설별 영업손익을 보면 수안보상록호텔<sup>2)</sup>의 경우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2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2022년 9월 현재 영업손익이 △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공무원 복시시설별 영업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천안 리조트	화성 골프장	남원 골프장	김해 골프장	수안보 상록호텔	계
2017	7,228	6,774	1,860	3,686	142	19,690
2018	4,890	6,605	2,141	3,481	△342	16,775
2019	5,780	6,560	2,322	3,690	212	18,564
2020	377	6,818	1,058	3,643	△2,068	9,828
2021	2,031	8,928	2,794	4,670	△2,662	15,761
2022. 9.	4,314	8,911	3,497	4,004	△900	19,826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상록호텔 현황]

(단위: 백만원)

위 치	면 적	취득가액	장부가액	주요시설
2) 충북 충주시	토지 13천m <sup>2</sup> , 건물 13천m <sup>2</sup>	19,737	14,184	객실(101실), 회실(580석) 식당(278석), 휴욕시설 등

이로 인해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기금증식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텔을 이용하는 공무원 수도 감소하고 있어 공무원 복지 기여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으로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업손익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경영 혁신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시설의 최근 5년간 개보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천안 리조트	화성 골프장	남원 골프장	김해 골프장	수안보 상록호텔	계
2017	1,006	977	1,201	1,147	198	4,529
2018	3,553	1,001	447	334	1,721	7,056
2019	4,536	1,501	690	989	216	7,932
2020	2,320	2,512	1,517	572	874	7,795
2021	3,626	2,003	1,039	733	1,584	8,985
2022. 9.	3,225	488	686	696	58	5,15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라 공무원 후생 복지 시설 중 수익성이 낮은 수안보호텔에 대해 매각을 검토(공단 혁신계획안 기재부 제출, ’22.8.31)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 지연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안보상록호텔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1,64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04억원(12.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253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93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98,434	997,070	997,070	1,125,327	128,257	12.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9,346	37,121	37,121	39,259	2,138	5.8
합 계	1,037,780	1,034,191	1,034,191	1,164,586	130,395	12.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경찰청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2조 4,38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817억원(1.5%) 증가하였다.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 12조 3,54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8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594,682	12,201,964	12,173,527	12,354,901	181,374	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5,239	78,511	78,350	78,590	240	0.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568	4,708	4,708	4,767	59	1.3
합 계	11,674,489	12,285,183	12,256,585	12,438,258	181,673	1.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경찰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2,08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89억원(11.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253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32억원이다.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98,434	997,070	997,070	1,125,327	128,257	12.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305	82,745	82,584	83,212	628	0.8
합 계	1,099,739	1,079,815	1,079,654	1,208,539	128,885	11.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2조 4,72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60억원(1.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조 3,84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3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8억원이다.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639,009	12,238,062	12,209,464	12,384,818	175,354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9,293	82,745	82,584	83,212	628	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568	4,708	4,708	4,767	59	1.2
합 계	11,722,870	12,325,515	12,296,756	12,472,797	176,041	1.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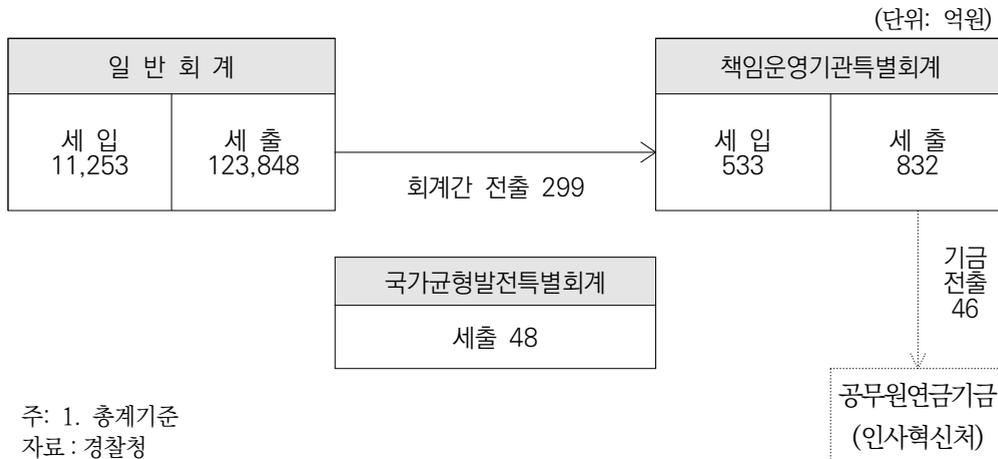
자료: 경찰청

다.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경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299억원을 전출한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46억원을 전출한다.



주: 1. 총계기준

자료: 경찰청

2023년도 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수사부서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 ② 경찰 만능주의 극복 및 현장대응력 강화, ③ 글로벌 치안활동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④ 첨단 과학 기술 활용 선도적 미래치안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구매·설치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의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구매단가를 책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험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재피해·보복위험이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 책임에 속하는 피해자 보호를 민간경호원 고용을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고, 그 효과가 제한적 한시적이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업무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계급의 경찰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치안활동비는 그 성격상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치안활동비를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경찰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21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기술개발(R&D)’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대응용 장비·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2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이버수사 지원 기술개발(R&D)’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수사인권및피해자보호활동	9,817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R&D)	2,340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R&D)	1,872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R&D)	1,500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6,382
합 계		21,911

자료: 경찰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해외치안협력강화’,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 ‘경무인사지원’, ‘감사관감찰활동’ 등이 있다.

① ‘해외치안협력강화’는 인터폴 분담금 사업이 인터폴 분담률 상승에 따라 증액이 되었고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②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은 내역사업인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 사업과 기초원천 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 사업이 각각 3개의 신규 과제 추진 비용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감사관감찰활동’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개)	수사지원	210,801	207,165	235,234	24,433	11.6
	교통과학장비관리	107,053	107,053	117,631	10,578	9.9
	해외치안협력강화	5,046	5,031	6,638	1,592	31.5
	차량관리	115,814	115,814	132,642	16,828	14.5
	피복관리	55,287	55,287	67,095	11,808	21.4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 2.0)(R&D)	5,350	5,350	7,920	2,570	48.0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R&D)	1,640	1,640	2,200	560	34.1
	경찰장비 개선(R&D) (舊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 한 표준, 인증 체계 구축)	1,248	1,248	2,440	1,192	95.5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R&D)	1,792	1,767	3,764	1,972	110.0
	경무인사지원	9,665	9,665	16,020	6,355	65.8
	감사관감찰활동	1,806	1,783	2,675	869	48.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 II

## 개별 사업 분석

1

### 무인단속장비 관련 고지서 발급량을 고려한 적정 우편요금 편성 필요

#### 가. 현황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sup>1)</sup>은 교통 관련 무인단속장비의 운영에 따른 과태료 등 고지서를 발급·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1,700만원 증액된 57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 우편요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통과학장비관리	112,665	107,053	107,053	117,631	10,578	9.9
우편요금	43,795	52,360	52,360	57,977	5,617	1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은 예산 편성 시 고지서 발급량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측면이 있고 모바일 고지서 발급에 따라 향후 고지서 발급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우편요금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2023년도 예산안은 579억 7,700만원으로, 무인단속장비 20,521대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등 고지를 위한 우편물 제작 수수료 57억 5,700만원과 우편료 522억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일반회계 1331-313의 내역

이는 전년 대비 56억 1,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과속 등의 적발 건수가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23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증가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2023년도 예산안은 우편요금의 예산액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다.

[2022~2023년도 예산안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증감률
무인단속장비 수	18,462	20,521	11.2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	52,360	57,977	10.7

자료: 경찰청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책정하였던 과태료 등 고지서 발급량에 대비 실제 발급량이 낮아 우편요금의 집행도 부진한 상황으로, 2022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예산액 523억 6,000만원 중 260억 9,800만원만 집행되었다(집행률 50.0%).

2022년 8월까지의 우편요금 지출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면 연말 기준 391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130억 7,3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과태료 등 고지서 물량이 과다 책정된 결과로 판단된다.

[2022년도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	집행예상액(B)	불용예상액	예상집행률(B/A)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	52,360	26,098	39,147	13,073	75.0

주: 연말 기준 집행예상액과 불용예상액은 8월말까지의 집행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 것임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집행부진 및 고지서 물량 과다 산정 문제는 무인단속장비의 확충 규모가 증가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도에도 예산액 437억 9,500만원 중 337억 8,100만원만 집행하고 23억 2,800만원은 이·전용, 76억 8,500만원은 불용한 바 있다(집행률 77.1%).

이러한 우편요금의 집행부진 문제는 예산 편성 시 다음 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에 따라 우편요금을 편성하게 되나, 실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공사 및 장비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단속장비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예상 도입 시점과 실제 운영 시작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시점 및 규모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23년부터는 경찰청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을 통해 발송되는 고지서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우편이 아닌 국민비서<sup>2)</sup> 또는 민간 앱을 통하여 과태료 등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에 동의한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고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물 발송을 대체하게 되므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8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8월말 기준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99만명이다. 국민비서 가입자 수가 약 1,500만명임을 고려할 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절감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현황]

구분	우편	전자고지
발송비용	등기우편: 2,530원 일반우편: 400원	5.5원
발송 건수	7,275,343건	81,771건

주: 2022.6.8.~2022.7.31. 간의 발송 건수임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정부 차원의 대국민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행정정보 알림, 제도 안내, 민원상담 등이 제공된다.

종합하면,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경우 예산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예상 도입 시점과 실제 운영 시작시점 간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고, 2022년 6월부터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우편요금의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액이 아닌 실제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 집행액을 기반으로, 무인단속장비 증가분과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에 따른 우편고지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우편요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sup>1)</sup>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구매·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700만원 증액된 2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통과학장비관리	112,665	107,053	107,053	117,631	10,578	9.9
무인단속장비 구매	11,205	2,030	2,030	2,987	957	47.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2) 2022년부터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무인단속장비 구매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은 장비 구매의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격차로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구매단가를 책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동화기기로서, 2023년도 예산안은 총 98대의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2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다.

무인단속장비는 기기의 이동성에 따라 고정식, 이동식,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로 구분되며, 고정식 단속장비는 단속유형 및 방법에 따라 다시 과속, 구간, 후면번호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일반회계 1331-313의 내역사업

판 단속장비로 분류할 수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무인단속장비의 구매물량과 편성단가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2023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대)

구분	고정식			이동식	차량탑재형
	과속	구간	후면번호판		
구매물량	19	7	25	7	47
편성단가	30	30	40	17	23
예산액	570	210	1,000	119	1,088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고정식 단속장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편성단가와 실제 집행단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8~2023년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단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고정식							
	과속		구간		다기능		후면번호판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2018	30	24	30	25	26	25	-	-
2019	30	23	30	22	32	25	-	-
2020	30	20	30	20	32	21	-	-
2021	30	21	30	21	32	22	-	-
2022	30	24	-	-	-	-	-	-
2023	30		30		-		40	

주: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안 편성단가 기준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고정식 단속장비의 편성단가 대비 실제 집행 단가는 평균적으로 약 700만원 낮게 나타났으며, 편성단가 대비 집행단가의 비율은 평균 76.5%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경찰청의 대량·일괄 구매와 업체간 경쟁 등으로 인한 단가 하락이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 도로여건에 따라 철주 등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단가가 추가로 절감되는데, 2018년 이후 총 289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 철주 등을 재활용하여 대당 평균 450만원의 단가가 절감되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불용하거나 무인단속장비의 추가 구매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각각 낙찰차액 8억 8,600만원과 28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낙찰차액 중 7억 5,400만원은 불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동식 단속장비 68대와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10대의 추가 구매에 활용하였다.<sup>2)</sup>

[2019~2021년도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9	9,669	8,783	0	886
2020	9,900	1,926	5,118	2,856
2021	16,323	13,970	1,599	754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격차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수의 무인단속장비가 확충되고, 고정식 단속장비의 낙찰차액이 이동식·차량탑재형 단속장비 구매에 사용되는 등 국회 예산심의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낙찰차액이 불용·이월되는 경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무인단

2) 다만, 단속장비의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15억 9,900만원은 이월되었다.

속장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게 되므로, 집행단가가 편성단가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도 무인단속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편성단가의 80% 수준에서 집행단가가 결정되는 등 장비의 개별 구매에 따른 편성단가 인상 정도가 기존의 단가 격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편성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구매 물량 및 예산 산출 시 적정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당 규모의 낙찰차액이 불용·이월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피해자보호활동 사업<sup>1)</sup>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 발생 직후 긴급 보호·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1,500만원 증액된 4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증액요인은 범죄피해자의 민간경호원 고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억원의 신규 편성이다.

[2023년도 피해자보호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	7,985	8,978	8,888	9,817	929	10.5
피해자보호활동	2,198	3,007	2,917	4,032	1,115	3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2) 수사지원(1231-311), 청사시설관리(7131-312), 인권·피해자보호활동(7133-312)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2021~2022년도의 경우 이관 전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액을 합한 값임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가의 역할·책임에 속하는 피해자 보호를 민간경호원 고용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그 효과가 제한적·한시적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보호활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40억 3,200만원으로, 이 중 7억원은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안]

-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지원 700백만원(100명×500천원×14일)
- ※ 단가 500천원은 민간 경비업체 시장조사를 통해 고품질 경호 서비스 제공 업체의 평균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

자료: 경찰청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따라 재피해·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가 민간경호원을 고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0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민간경호원 2명이 14일의 기간 동안 하루 10시간(주간)씩 경호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의 선정은 담당 수사관이 일차적으로 재피해·보복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판단하고, 이후 개별 경찰서의 심사위원회와 시·도 경찰청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으로, 경찰청은 올해 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피해·보복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 고유의 사무영역에 속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따른 재피해·보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경호원 고용을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가 그 책임 및 권한이 제한적인 민간경호원을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경찰사무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이전비, 임시숙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그 대상, 지원기간 및 민간경호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 대상 수의 측면에서 데이트폭력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5만 7,29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스토킹피해의 경우 2022년 1월~6월 간 1만 4,27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하여, 동 사업을 통한 경호서비스 지원 대상은 연간 100명으로, 피해자 중 소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간경호 서비스가 14일간 하루 10시간씩 제공되는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과 관련된 범죄는 신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경호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일시적·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호를 수행하는 민간경호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상황에서 민간경호원에 의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응을 위한 충분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책임에 속하는 피해자 보호를 민간경호원 고용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것의 적절성 및 지원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일시적인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트폭력·스토킹으로 인한 재피해·보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sup>2)</sup>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 접근하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가. 현 황

치안활동지원 사업<sup>1)</sup>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여건 개선을 위한 치안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5,000만원 증액된 4,83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치안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치안활동지원	457,299	481,866	481,768	483,516	1,650	0.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특정업무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계급의 경찰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치안활동비는 그 성격상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치안활동비를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치안활동지원 사업 예산 4,835억 1,600만원 중 2,675억 5,000만원은 일선 경찰관에 대해 치안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정 이하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월 17만원의 치안활동비가 지급될 계획이다.

치안활동비는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이후 경찰관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1990년 ‘특별방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경감 이하 경찰관에 월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고, 2001년 지급대상을 경정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04년에 예산과목이 운영수당(210목)에서 특정업무경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131-313

비(250목)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치안활동비는 그 성격상 주중·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위험근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로 편성·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수당의 성격을 지니는 치안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치안활동비를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업무경비가 아닌 인건비(수당) 등으로 해당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특공대운영비 사업<sup>1)</sup>은 테러 대응 등을 위하여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경찰특공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1,600만원 증액된 13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경찰특공대 급식비 17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도 경찰특공대 급식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테러상황관리	23,436	24,437	24,566	26,757	2,320	9.5
특공대운영비	11,671	11,375	11,504	13,320	1,816	15.7
급식비 (210-04목)	1,290	1,773	1,923	1,773	△150	△7.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경찰특공대 급식비는 정액급식비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찰특공대에 대하여 별도의 급식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사건에 대한 예방·무력진압, 폭발물의 탐색·처리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부대로,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총 15개 특공대, 703명이 근무 중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일근-당직-휴무)<sup>2)</sup>이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134-311의 내역사업

2) 일근은 9시부터 18시, 당직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서울특공대의 경우 일직-일직-당직-휴무의 4교대로 운영된다.

특공대운영비 사업은 경찰특공대 운영에 필요한 피복비·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동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경찰특공대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비 1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경찰특공대 급식비 예산안]

경찰특공대 급식비: 1,773백만원
특공대원 급식비 1,496백만원=11,000원 × 638인 × 365일 × 58.4%
대테러기동 급식비 125백만원(=7,000원 × 82인 × 364일 × 60%
신설특공대 급식비 150백만원=11,000원 × 64인 × 365일 × 58.2%
단수조정 2백만원

자료: 경찰청

그런데 경찰특공대에 소속된 대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sup>3)</sup>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다든가 점에서, 정액급식비와 별도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여 경찰특공대 대원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경찰특공대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공대의 훈련장소가 고립되어 있어 외부에서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급식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특공대의 특성상 외부에서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급식비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단체·내부 급식을 할 때 정액급식비에서 해당 식비를 공제하거나 개별적으로 식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경찰특공대 대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부 특수부대의 부사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임명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이다.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관·장교 및 해양경찰특공대 대원의 경우, 「군인급식규정」<sup>4)</sup>,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군인은 영외자급식비<sup>5)</sup>)를 지급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급식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방부 특수부대의 부사관·장교의 경우 영내 급식을 하게 되면 영외자급식비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급식비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

[경찰특공대, 국방부, 해양경찰특공대 급식비 등 비교]

구 분	경찰특공대	국방부 부사관·장교	해양경찰특공대
정액급식비 (영외자급식비)	편성(14만원)	편성(13만 7,000원)	편성(14만원)
별도 급식사업 편성 여부	17억 7,300만원	없음	없음
비고	-	정액급식비를 받는 자가 영내급식을 먹는 경우 정액급식비에서 공제	-

자료: 경찰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따라서 특공대에 대하여만 정액급식비와 별도로 급식비 예산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중복 지원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 제24105호)」

제2조 (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군인 간부는 원칙적으로 영내자 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영외자급식비(월 137,000원)를 지급함. 다만, 예외적으로 GP·GOP, 해강안근무자, 5분대기조 인원 등 임무수행상 부득이하게 3식을 영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간부는 영내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원에게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예산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0억 5,5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9억 8,000만원(△73.9%) 감소하였다.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45	4,035	4,035	1,055	△2,980	△73.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4,072억 9,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633억 1,800만원(△53.2%) 감소하였다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9,938	872,594	870,615	407,297	△463,318	△53.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24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준비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2022년 0.3억원 → 2023년 39억원), ②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장비 제작 및 관리사업(2022년 25억원 → 2023년 361억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선거일 2022년 3월 9일)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22년 6월 1일) 종료에 따라 ③ 대통령선거관리 사업(2022년 2,658억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2022년 168억원), 선거보전금 사업(2022년 1,268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④ 정당보조금 사업(2022년 1,432억원 → 2023년 477억원) 예산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도 수행 예정인 위탁선거 관련 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선거방송은 2023년부터 TV방송채널 송출을 중단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 중 방송송출 대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거장비는 국가와 지자체의 선거에 모두 활용됨에도 그 구매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 간 분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24년 도입 장비는 전액 국비로 제작할 예정이므로, 국가·지자체 간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2024년 도입 장비의 제작비용을 지자체와 분담하고 국비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선거장비및물품관리, 국회의원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가 있다.

① 선거관리및물품관리 사업은 사전투표운용장비와 투표기분류기 신규 제작에 따른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고 ②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2024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 위탁선거관리 사업은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운영경비가 증액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485	2,485	36,075	33,590	1,351.7
	국회의원선거관리	30	30	3,894	3,864	12,880.0
	위탁선거관리	226	226	554	328	14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 위탁선거경비 관련 문제점

위탁선거란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로, 공공단체등의 대표, 임원 등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관리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위탁선거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 등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등 단체의 재량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선거로 구분된다.

[위탁선거의 구분]

구분	의무위탁선거	임의위탁선거
내용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단체가 재량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대상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 밖에 의무·임의위탁선거 대상 단체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에 의무위탁선거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위탁수행할 예정이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 1-1.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문제

### 가. 현황

위탁선거관리 사업<sup>1)</sup>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위탁선거관리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8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탁선거관리	114	226	226	554	328	145.1
위탁선거관리	179	161	161	153	△8	△5.0
동시조합장선거관리	-	65	65	401	336	516.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분석의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탁선거 관련 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78조에 따르면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④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와 ⑤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위탁선거법」의 비용분담 관련 규정]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필요한 경비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할 계획인 경비 4억 100만원은 동 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위탁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를 별도로 납부받아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5년과 2019년 수행된 제1회·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도 위탁단체 부담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예산 외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제1회~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비용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위탁 단체수	예산 내		예산 외		
			예산액	집행액	납부액	집행액	반납액
2015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1,326	473	444	32,775	24,588	8,166
2019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1,344	468	394	36,946	26,877	10,069
2023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1,347	40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위탁선거경비의 예산 외 운용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7조<sup>2)</sup> 및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제7조<sup>3)</sup>에 반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 차원에서 도 지속적인 시정요구 및 지정이 있어 왔으나, 2023년 예산안에도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는 세입·세출에 계상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배 관련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구분	시정요구사항(유형)
2019 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li>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li> </ul>
2018 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li> </ul>
2016 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국가재정법」

### 제17조(예산총계주의)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3)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의 재량에 따라 위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예산안 편성·심의 단계에서 예산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선거기간이 두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경비의 이월처리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sup>4)</sup>

그러나 위탁선거관리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위탁선거경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사전에 그 실시가 예정된 의무위탁선거의 경우, 예측가능성 문제로 인한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경비를 세입·세출에 계상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위탁선거에 필요한 경비 중 위탁단체 부담분도 세입·세출에 계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함에 따라 국가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4)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탁선거관리경비의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실시 중이라는 입장이다.

## 1-2. 위탁선거 홍보 경비의 국비 부담 문제

### 가. 현황

위탁선거관리 사업<sup>5)</sup>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위탁선거관리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8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300만원은 위탁선거의 홍보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

[2023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탁선거관리	114	226	226	554	328	14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분석의견

**위탁선거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선거법」상 위탁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이므로, 국가예산으로 해당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코드: 일반회계 1131-306

【「위탁선거법」의 비용분담 관련 규정】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동 사업에 편성된 위탁선거관리 예산 5억 5,400만원 중 5,300만원은 선거홍보를 위한 경비로, 「위탁선거법」상 국가가 아닌 위탁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속한다.

【위탁선거관리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위탁선거 홍보콘텐츠 제작비 5,200만원
- 위탁선거 홍보콘텐츠 제작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경비는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위탁선거법」 제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제7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비는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관리업무의 지도·감독 경비와 같이 위탁선거 사무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선거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탁선거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국비로 지출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상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 편성된 해당 경비는 위탁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한국선거방송의 송출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황

한국선거방송 운영 사업<sup>1)</sup>은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선거·민주주의 관련 지식기반 콘텐츠를 생산·전파하는 한국선거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한국선거방송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3,072	2,842	2,842	2,704	△138	△4.9
한국선거방송 운영	1,900	1,459	1,459	1,459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분석의견

한국선거방송은 2023년부터 TV방송채널 송출을 중단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 중 방송송출 대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선거방송은 현재 TV방송채널로 선거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온라인플랫폼<sup>2)</sup>에 콘텐츠<sup>3)</sup>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선거방송의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1133-332의 내역사업

2)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방송 효과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TV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온라인채널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선거방송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회 시정요구사항]

구분	감사결과 및 국회 시정요구사항
2020년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한국선거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선거방송 운영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운영이 필요하다면 시청률 또는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년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선거방송의 방송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고 한국선거방송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한국선거방송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제도개선)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선거 홍보 및 정보전달 효과가 미미하고 24시간을 채울 방송콘텐츠가 부족하며 향후 지속적인 예산·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한국선거방송 채널의 계속 운영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통보)

자료: 국회 결산 심사보고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공개문(2019.10.)

그런데 한국선거방송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와 동일하게 TV채널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송출 대행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3년도 한국선거방송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프로그램 제작·구입 863백	· 촬영차량 임차 8백
· 방송송출 대행 450백	· 제작·촬영장비 임차 7백
· 심의위원회 운영 16백	· 제작촬영 여비 10백
·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70백	· 제작·교류 등 업무협의 10백
· 촬영·제작 식대 5백	·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20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 민주주의 가치 확산 콘텐츠, 선거법 관련 콘텐츠, 선거정보 뉴스 등

동 사업 예산안에 방송송출 대행 비용이 계상된 것은 정부안 편성 당시 한국선거방송의 TV채널 송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4) 온라인채널로만 방송을 송출할 경우 별도의 방송송출 대행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선거방송의 TV방송 송출이 2023년부터 중단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방송송출 대행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4) 2022년 9월에 한국선거방송의 TV방송 송출 중단이 결정되었다.

### 가. 현황

선거장비관리 사업<sup>1)</sup>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 활용되는 선거장비를 제작·보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4억 1,000만원 증액된 34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선거장비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선거장비및물품관리	4,294	2,485	2,485	36,075	33,590	1,351.7
선거장비관리	3,594	1,342	1,342	34,752	33,410	2,489.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분석의견

선거장비는 국가와 지자체의 선거에 모두 활용됨에도 그 구매비용에 관한 국가-지방 간 분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24년 도입 장비는 전액 국비로 제작할 예정이므로, 국가·지자체 간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2024년 도입 장비의 제작비용을 지자체와 분담하고 국비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장비관리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347억 5,200만원으로, 그 중 선거장비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사전투표운용장비 17,062대의 제작비용 260억 6,200만원, 투표지분류기 1,381대의 제작비용 75억 2,800만원, 조달수수료등 기타비용 1억 5,700만원 등 총 33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선거장비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용의 50%에 해당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9의 내역사업

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통해 선거장비 제작비용 잔여분을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2023년 제작 예정인 선거장비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선거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나, 사전투표운동장비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사전투표율<sup>2)</sup>을 고려하여 교체물량 외에 추가물량을 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작된 선거장비는 점수 등을 거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사용될 예정이다.

[선거장비 보유 현황 및 제작계획]

구 분	보유		제작(2023년도 예산안)			
	수량(대)	단가(천원)	수량(대)	단가(천원)	예산액 <sup>1)</sup> (백만원)	
사전투표운동장비	'14년형	12,500	1,777	17,062	3,055	26,062
	'18년형	1,000	2,045	-	-	-
투표지분류기	'14년형	1,381	8,600	1,381	10,899	7,528
	'18년형	1,177	8,936	-	-	-

주: 1) 전체 구매비용을 23년도와 24년도 예산에 50%씩 나누어 편성할 계획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장비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할 예정으로, 선거장비 제작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간 비용분담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최근 10년간 선거장비 제작비용의 국가-지방 간 분담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장비의 유형 및 구매시기에 따라 제작비용의 분담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 별도의 기준 없이 선거장비 제작비용의 분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2014년 지방선거 474만명(11.5%) → 2017년 대통령선거 1,107만명(26.1%) → 2022년 대통령선거 1,632만명(36.9%)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선거장비 제작 내역]

장 비 명		제작 년도	제작수량 (대)	제작비용(억원, %)			
				계 (A)	국비(B)	지방비	국비비율( B/A)
사전 투표 운영 장비	투표용지 발 급 기	2014	12,500	149.5	49.7	99.8	33.2
		2018	1,000	11.8	-	11.8	0.0
	본 인 확 인 기	2014	12,500	72.0	21.9	50.1	30.4
		2018	1,000	8.7	-	8.7	0.0
투표지분류기		2014	1,381	118.0	35.1	82.9	29.7
		2018	1,177	105.2	25.0	80.2	23.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법률 등에 선거장비 제작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선거장비가 제작된 후 처음 사용되는 선거의 유형에 따라 국가-지방 간 제작비용의 부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과 2018년에 제작된 선거장비의 경우 제6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됨에 따라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높았던 반면, 2024년 제작 완료 예정인 선거장비의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사용될 예정이므로 제작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장비 제작 이후 첫 선거와 비용부담]

구분	제작 이후 첫 선거	국비 비율(%)
2014년 제작장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6.4.)	29.7~33.2
2018년 제작장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0.0~23.8
2024년 제작장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1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선거장비의 경우 제작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7년의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모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작 이후 첫 선거의 유형을 기준으로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2023년 예산안에 제작비용이 편성된 선거장비의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뿐만 아니라 제9회·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2030년 예정)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장비의 제작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보다는 그 일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2023~2024년에 걸쳐 제작되는 선거장비의 제작비용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선거장비 제작 시 동일한 비용분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소방청



## 1 현 황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42억 4,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억 6,700만원(18.6%)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소방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18	3,579	3,579	4,246	667	18.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소방청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962억 7,9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10억 원(16.1%)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소방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9,822	242,563	255,296	296,279	40,983	16.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소방청

한편,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2023년도 소방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신규사업으로는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R&D)에 10억원, 소방현장 탐색·진압활동지원 센서 및로봇기술개발(R&D)에 13억원, 소방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개발(R&D)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②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276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04억원, 소형사다리차 확충 57억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23억원 등 건립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연차소요를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632억원,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 112억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정보화사업에 165억원, 7개 연구개발사업에 208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으로 수소 소방드론 보강을 위해 중앙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내내역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은 차대 수입과 차량 개조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집행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통합구매(일괄발주)를 하는 등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하여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항만 소방선박 도입사업은 2023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전체 선박 건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사업 단계별로 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의 연구개발건축사업은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총 공사비의 81%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2023년도 내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연구개발건축비는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소방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의 연구개발(R&D)사업으로, 53억원 규모이다.

난접근성 특수화재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R&D)사업은 고층, 원거리 등 접근이 어려운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탄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지원 센서 및 로봇기술개발(R&D)사업은 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과 복합화재 진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로봇시스템개발 사업이며, 소방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개발(R&D)사업은 과학기술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관리, 교육·훈련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난접근성 특수화재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 진압기술개발(R&D)	1,000
	소방현장 탐색·진압활동 지원센서 및 로봇기술 개발(R&D)	1,300
	소방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개발R&D)	3,000
합 계		5,300

자료: 소방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에 공사 2년차 소요반영으로 155억원 증액되었고, 재난대응역량 강화 기반조성을 위해 ②전국소방헬기 통합운영지원 사업에 119항공정비실 구축 14억원을 신규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③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에 9억원, ④소방교육훈련운영 사업에 9억원, ⑤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의 대형헬기 및 중형헬기 도입에 171억원, 국가항만소방선박 통합운영을 위한 선박 건조비 및 소방정대 건축비에 102억원, ⑥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사업의 지진훈련장 건립에 57억원, 장비비축기지 건립에 6억원, ⑦119구급현장대응스마트시스템구축(정보화)사업에 24억원을 증액하였다.

[소방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국립소방병원 건립	12,090	12,090	27,593	15,503	128.2
	전국소방헬기통합운영지원	1,467	9,855	1,646	△8,209	△83.3
	119항공정비실 구축	-	-	1,418	1,418	순증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등 보급	753	753	1,694	941	125.0
	소방교육훈련운영	3,355	3,305	4,159	854	25.8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35,061	34,780	63,205	28,425	81.7
	소방헬기 도입	18,400	18,400	35,458	17,058	92.7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10,088	10,088	20,252	10,164	100.8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	7,089	7,069	11,225	4,156	58.8
	지진훈련장 건립	1,598	1,598	7,252	5,654	353.8
	장비비축기지 건립	608	608	1,243	635	104.4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정보화)	1,403	1,403	2,449	1,046	74.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소방청

## II

## 개별 사업 분석

1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연례적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 가. 현황

산불전문진화차 사업<sup>1)</sup>은 소방펌프차 진입이 곤란한 산림지역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기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산불전문진화차를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5,000만원 감액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3,640	3,000	6,000	2,250	△3,750	△2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은 차대 수입과 차량 개조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집행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통합구매(일괄발주)를 하는 등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하여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2-315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50%가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청은 산림화재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을 고려하고 각 시·도의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3개년 동안 총 32대(2021년 10대, 2022년 16대, 2023년 6대)의 산불전문진화차를 13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산불전문진화차 연도별 보강 계획(안)]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국비 50%) * 대당 750백만원 기준	10대 3,750백만원	16대 6,000백만원	6대 2,250백만원	32대 12,000백만원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동 사업 1차년도인 2021년도에는 부산(1대), 대구(1대), 대전(1대), 세종(1대), 경기(2대), 충북(1대), 충남(1대), 경북(2대)에 총 10대의 산불전문진화차를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대수인 10대 중 3대만(대구1대, 경기2대)이 연도 내에 납품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대 중 5대(부산1대, 대전1대, 충북1대, 경북2대)는 2022년도 상반기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2대(세종1대, 충남1대)는 2022년도 7월에 납품이 완료되었고, 2022년도 보강대수 16대는 모두 2023년 상반기에 납품 예정으로 확인된다.

[2021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소방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납품일
부산(1대)	375	375	375	229	144	2	61.0	2022. 03. 23.
대구(1대)	375	375	375	356	-	19	94.9	2021. 12. 20.
대전(1대)	375	375	375	235	140	11	59.7	2022. 06. 28.
세종(1대)	375	375	375	286	89	13	72.8	2022. 07. 22.
경기(2대)	750	750	750	722	-	28	96.3	2021. 12. 24.
충북(1대)	375	375	375	253	122	11	64.5	2022. 03. 31.
충남(1대)	375	375	375	265	110	-	70.6	2022. 07. 27.
경북(2대)	750	750	750	503	220	27	67.0	2022. 06. 08.

자료: 소방청

[2022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소방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납품일
대구(1대)	375	375	375	178	144	2	47.5	2023년 상반기예정
경기(1대)	375	375	375	29	-	19	7.7	2023년 상반기예정
강원(5대)	1,875	375	1,875	288	140	11	15.4	2023년 상반기예정
충북(1대)	375	375	375	253	89	13	67.5	2023년 상반기예정
충남(2대)	750	750	750	504	-	28	67.2	2023년 상반기예정
경북(6대)	2,250	375	2,250	577	122	11	25.6	2023년 상반기예정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의 경우 국내 제작 차량이 아닌 차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특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19 및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차대 수입에 7~8개월 이상 소요되고, 차량 개조에 6개월 정도가 소요<sup>2)</sup>되며, 동 사업 계약업체가 단일 업체로 확인되는 바, 2023년 보강 대수를 연도 내에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되고 있고, 제작업체의 연간 생산량은 최대 30대 정도로 작업역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구매계약 시기가 다르고 차대 수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회계연도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실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C/A)	실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1	3,750	3,750	-	3,750	3,750 (2,815)	- (825)	100	75.0	110
2022.9	3,000	6,000	-	6,000	6,000 (1,828)	-	100	30.5	-

자료: 소방청

따라서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소요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통합구매(일괄발주)를 하는 등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하여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소방청에 따르면 산불전문진화차는 국내 제작 차량이 아닌 독일 벤츠사의 유니모그(U5023) 모델 차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특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입에서 제작까지 13~14개월이 소요된다는 설명임.

### 가. 현황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sup>1)</sup>은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구조대 훈련 지원,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 특수구조대 훈련지원, 소방헬기 도입,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 운영 등으로 구성되고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1억 4,400만원 증액된 63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도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119특수구조대 지원	41,562	35,061	34,780	63,205	28,144	80.3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53	10,088	10,088	20,252	10,164	10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2023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전체 선박 건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사업 단계별로 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은 주요 항만의 화재 등 재난의 효율적 대응과 인명구조 등 항만의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선박 도입, 시설확충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7개년동안 4개 국가항만에 소방선박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71-301

관리청사 및 4척의 소방선박(500톤급)을 확충할 계획<sup>2)</sup>으로, 우선 영남권역 2개소 (부산신항, 울산항)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간 소방선박 관리청사 및 소방선박을 확충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이다.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65,658	1,436	10,088	20,252	33,882	
청사	설계비	236	236	-	-	-	부산신항, 울산항 2개소 건립 비용
	공사비	4,930	-	-	2,464	2,466	
선박	설계비	1,200	1,200	-	-	-	부산신항, 울산항 2척 건조 비용 ※1대 당 296억원
	건조비	59,292	-	10,088	17,788	31,416	

자료: 소방청

그런데 동 사업은 2021년 청사 및 선박 설계 지연으로 2022년[청사(울산: 4월, 부산 6월), 선박: 7월]에 완료되었고, 선박 건조 사업은 2022년 9월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 의뢰 증으로 2021년, 2022년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각각 3.7%, 8.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개소	설치 지역	비고
1차 (21년~24년)	500톤급	2개소	▸ 부산신항, 울산항
2) 2차 (24년~27년)	500톤급	2개소	▸ 인천항, 광양항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실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C/A)	실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1	선박	1,200	1,200	-	1,200	5	780	0.4	0.4	415
	청사	236	236	-	236	49	157	20.8	20.8	30
	계	1,436	1,436	-	1,436	53	937	3.7	3.7	445
2022.9	선박	10,088	10,088	780	10,868	780	-	7.7	7.2	-
	청사	-	-	157	157	157	-	-	100	-
	계	10,088	10,088	937	11,025	937	-	9.3	8.5	-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동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인 소방선박 관리 청사 건립 및 소방선박 도입을 위한 설계비 상당액이 이월되면서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 예산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

2022년 9월 현재 선박 건조 사업이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의뢰한 상황으로 선박 건조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낙찰 등 일련의 과정들에 상당한 기간(공고기간 40일이상)이 소요되고 500톤급 선박 건조에 통상 2.5~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청 납품은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5년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방청에서 예상하는 계약일(2022년 11월중)부터 2023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전체 선박 건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사업 단계별로 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 체계 구축연구(R&D): 이월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가. 현황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sup>1)</sup>는 제한된 공간에 VR을 활용한 다양한 화재상황을 재현하고, 훈련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증기반의 복합훈련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1,000만원 감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sup>1)</sup>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5,931	4,110	4,110	3,500	△610	△14.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의 연구개발건축사업은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총 공사비의 81%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2023년도 내에 집행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연구개발건축비는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60-607

동 사업은 실감기반 및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소방대원의 첨단 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수행하면서도 훈련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개발 사업<sup>2)</sup>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출연사업으로 2024년 완료 예정이다.

[2023년도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편성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000	2,000	2,423	6,106	4,110	3,500	1,861
연구개발건축비	7,303	-	-	3,265	2,638	1,400	-
연구개발활동비	12,374	1,923	2,352	2,666	1,472	2,100	1,861
기획평가관리비	323	77	71	175	-	-	-

자료: 소방청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 필드 테스트장 건축공사는 VR 기반 연구시설 장비구축과 실증용 실감기반 훈련 내부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 3월 설계완료 후 건축인가 및 실시인가 절차 진행으로 2022년 9월 현재 공사 착수를 못한 상황으로 확인 되고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2021년도에 계약금 및 선금을 공사 업체에 지급했으나, 건축허가 및 실시인가 절차 진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공사 업체는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방청은 연도 내에 공사비 28억 2,4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과학기술부·소방청 간 부처협력 사업으로 수행되며 총 투입액 290억원 중 소방청 소관 투입액은 200억원, 과학기술부 소관 투입액은 90억원임.  
과학기술부는 VR콘텐츠 원천기술 및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고 소방청은 개발기술과 연계한 훈련용 시나리오 기획, 훈련 테스트장 구축 등 담당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실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C/A)	실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9	건축비	-	-	-	-	-	-	-	-	
	연구비	1,923	1,923	0	1,923	1,900	0	98.8	98.8	23
	계	1,923	1,923	0	1,923	1,900	0	98.8	98.8	23
2020	건축비	-	-	-	-	-	-	-	-	
	연구비	2,352	2,352	0	2,352	2,116	231	90.0	90.0	5
	계	2,352	2,352	0	2,352	2,116	231	90.0	90.0	5
2021	<b>건축비</b>	<b>3,265</b>	<b>3,265</b>	<b>0</b>	<b>3,265</b>	<b>3,009</b>	<b>256</b>	<b>92.2</b>	<b>92.2</b>	<b>-</b>
	연구비	2,666	2,666	231	2,897	2,470	427	92.6	85.3	-
	계	5,931	5,931	231	6,162	5,479	683	92.4	88.9	-
2022.9	<b>건축비</b>	<b>2,638</b>	<b>2,638</b>	<b>256</b>	<b>2,894</b>	<b>70</b>	<b>-</b>	<b>2.7</b>	<b>2.4</b>	<b>-</b>
	연구비	1,472	1,472	427	1,899	613	-	41.6	32.3	-
	계	4,110	4,110	683	4,793	683	-	16.6	14.2	-

자료: 소방청

이에 소방청은 11월에 환경영향평가 완료 예정으로 12월 착공이 가능하므로 공사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행정 절차가 2022년 연도말 또는 2023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공사 업체는 기 지급된 2021년 공사비와 2022년 공사비를 합한 59억원을 2023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의 연구개발건축사업은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총 공사비의 81%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2023년도 내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연구개발건축비는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093-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